

전기통신환경의 변화와 전기통신법 개정

83312

김 노 철  
체신부 통신정책국 통신기획과장

Changing Environment of Telecommunications  
and An Amendment to The Telecommunications Law

Kim, Ro Chul  
Planning Division, Telecommunication Policy Bureau, MOC

1. 서론

1876년 전화가 발명된 후 100여년이 지나는 동안 전기통신의 발전은 참으로 눈부신 바 있었다. 아울러 전기통신의 기술 발전을 수용하는 제도적 개혁도 수없이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 두 차례에 있어 시의 전기통신 관계를 규율하는 법령 체계는 1885년 전신업무가 개시된 후 일정 시대의 일본 법령 및 해방 이후 1961년까지의 의용법시대를 거쳐 1961년 12월에 비로소 우리 손으로 만든 전기통신법을 갖게 되었다.

항상 앞질리기는 사회 현실을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법령의 일반조 속성에 따라 우리의 전기통신법도 제정 후 다섯 차례의 소폭적 개정으로 그간의 사회적 변화를 수렴해왔고 1977년에는 전면개정에 의하여 대이타통신 분야를 새롭게 수용하고 전기통신생산물에 대한 기술 지도 등을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1982년 국 전기통신공사의 발족으로 전기통신관리주체의 가능의 분리 개편되는 과정에서 일정 및 관계부처의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전기통신법의 개정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법령 발전의 궤도를 잃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전기통신환경의 변화와 그 수용 체계 시의 전기통신법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그간의 전기통신의 환경변화를 일별하고 현행 전기통신법의 개정 필요성, 개정 방향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2. 전기통신환경의 변화

전기통신의 환경이라 함은 사회 이전동 전기통신의 외부적 요인을 말하는 것이겠으나 여기에서는 내재적 요인도 아울러 언급하고자 한다.

(1) 전기통신기술의 발전

19세기말에 전신·전화로 시작된 전기통신기술은 최근 반도체기술, 디지털기술, 광섬유기술 등과 함께 Computer라는 좋은 동반자를 만나 전송 및 교환등 모든 분야에서 가능할 수 있는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 나선로, 무선에 의존 하던 전송분야의 기술은 동축 케이블을 기점 현재는 광섬유 케이블·통신위성 등을 활용하기에 이르렀고 종래의 기계식 교환기는 현재 전전자식 교환기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2)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출현

과거의 전기통신서비스는 전신·전화 외주였으나 Videotex, Teletext, Teleconference 등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으로 점차 정보통신서비스에의 비중이 커가고 있다.

(3) 통신영역의 융합

유선 TV 등 유선과 무선방식이 복합된 통신영역이 등장하고 방송통신위성, MDS, VideoLink 서비스 등은 통신과 방송 영역의 한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전자우편의 등장으로 전기통신과 우편 서비스 자체의 융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4) 통신의 기능 및 역할의 변화

전신·전화가 주를 이루었을 때와 전기통신은 의사전달매체로서만 기능 해왔고 이에 대한 사회의 인식 또한 사치품 또는 산업발전의 부산물 정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나, 현재의 전기통신은 산업 및 행정활동의 능률화, 국제화의 촉진, 국민의 문화적 생활 수준에의 기여, 공·해·도·시·교통·문제의 해결수단, 의료·교육·건설·방재분야에의 공연 등 국민의

사회·경제활동 전반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발전의 필수적 수단으로 되고 있다.

- (5) 정보화 사회의 전진  
의에서 본 구 요인의 복합적 상승 작용에 의하여 현대사회는 농·공·상·물·인·에너지 중심의 산업사회로 부터 점차 정보의 가치와 기능을 중시하는 정보산업 중심의 정보화사회로 이행해 가고 있다.

(6) 서이비스 제공 주체의 분화

과거에는 Common Carrier 가 전기통신망의 운용 및 서이비스의 제공을 동시에 수행하였으나 서이비스의 개발 및 분화에 따라 Common Carrier 의 회선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다양한 서이비스를 제공하는 부가가치 통신업체(VAS)의 등장으로 서이비스의 주체가 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7) 전기통신 관광 기능의 분리

1982년 1월에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3월에는 한국데이터통신주식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전기통신 관광 기능이 분리되었다.  
즉 종래에는 체신부가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 기능과 영업기능을 동시에 수행해 왔으나 공사 및 회사의 설립을 계기로 공중전기통신 사업의 경영은 이를 위해 담당하고 체신부는 통신정책수행의 기능에 전념 할 수 있게 되었다.

3. 전기통신법 개정의 필요성

- 가. 전기통신환경 변화에의 능동적 대처  
의에서 본 바와 같이 전기통신의 환경은 부단히 변화되어 왔고 또 변화되어 갈 것이다.  
기왕의 변화를 수용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가능 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법령이 융통성 있게 개정되어야 한다.  
나. 전기통신법 체계의 문제점 보완

(1) 현행 전기통신법 체계

법률명	주요 내용
전기통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li> <li>○ 자가유선전기통신의 관리</li> <li>○ 전기통신 생산품에 대한 기술지도</li> <li>○ 전화 소개업</li> </ul>
전파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파 및 무선전기통신설비의 관리</li> </ul>
유선방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선방송 수신시설의 규율</li> </ul>
군용전기통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용전기통신의 관리</li> </ul>

전기통신 공사업법 한국전기 통신공사업 공중전기 통신시설 화장예관한 임시조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통신공사(電氣通信公司)의 규율</li> <li>○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설립·운영 및 감독</li> <li>○ 공중전기통신시설 투자재원의 조달</li> </ul>
---	---

(2) 문제점

(가) 전기통신 구분 야의 법 체계를 조율하는

기본적 공동규정의 미비

- 각 개별법의 규율분야를 초월하는 종합적인 정책 및 기획의 수립이 필요하나 연행법 체계하에서는 균형
- 정보화 사회장기종 합계회 유·무선·위성통신, 자가통신, 정보산업육성·국방 기술 진흥 등 포함)
- 장기통신망 계획 (전신·전화·데이터통신·군·관·민통신 수요포함)
- 국가통신의 종합 관리(유·무선·공중통신·자가통신등 포함)
- 연구·개발 지원정책
- 기술 기준
- 기술 지도
- 전기통신기지 재의 물질 양상을 위한 유통관리등

(나) 현행 전기통신법은 공중통신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주목적이나 전기통신분야의 새로운 규율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다른 법에 수용하기 곤란한 것은 모두 동일에 규율함으로써 법의 성격이 모호해졌고, 또한 정책 및 행정면에 관한 사항과 사업경영에 관한 사항이 혼재되어 있어 법체계의 협리성을 끌어하고 있다.

(3) 한국 데이터통신(주)의 사업경영권 설정

83년3월 데이터통신의 유통을 위한 전자회사로 한국 데이터통신(주)를 설립하고 전기통신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데이터통신부의 어려움하였으나 연행법에서는 본격적인 공중전기통신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

(4) 국가간통신망의 통합 추진

전기통신사업의 낭비를 피하고, 장차 통신망의 실현을 위한 전기통신망의 일원화를

위하여 현재 국가 및 공공 기관의 전기통신망을 통합하고 있는 바,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4. 개정의 방향  
현행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법과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분리 재정하여
- 전기통신법은
- 전기통신의 구분 약에 공통 적용 되는 기본적, 종합적 사항
  - 기술 발전 및 환경변화 추세에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행정 조장적 사항
  - 통신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 유도
  - 기간 통신망의 종합관리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인 전기통신정책의 수행을 위한 도구로서 가능하게 하고,
-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은
- 공중전기통신 이용에 관한 사법적 관계
  - 공중전기통신설비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 공중전기통신사업경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순수한 이용관계법으로 한다.

#### 5.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

##### 가. 전기통신법

###### (1) 전기통신 기본계획의 수립

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합리적인

발전과 정보화 사회의 축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전기통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법제상·행정상.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 이용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공중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 자가전기통신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망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2) 기술진흥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전기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 관한 사항

###### • 새로운 전기통신기술 및 방식의 채택에 관한 사항

###### • 전기통신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 • 전기통신기술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 • 전기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 기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효율적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전기통신 방식을 채택하거나 그 기종을 정할수 있다.

(4) 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정보를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예고 할수 있다.

(5) 정부는 연구기관·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고 체신부장관은 공중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재정적 지원을 하게 할수 있다.

(6) 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연구과제 및 연구자를 지정하고 전기통신기자재·생산업체 및 전기통신공사업자에게 기술지도를 한다.

(7) 전기통신기자재를 생산·수입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에게 영식승인을 얻어야하며 승인되지 아니한 기자재는 판매·진영 할수 없다.

(8)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규정은 현행과 대동소이 하다

(9) 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망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한국 전기통신 공사로 하여금 통합·운용하게 할수 있다.

(10) 전기통신망의 효율적 관리·운용·전기통신기술진흥 등 전기통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신부장관 소속 아래 국가통신조정위원회를 둔다.

##### 나. 공중전기통신사업법

(1) 체신부장관은 공중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전기통신공사와의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 정보통신등 공중전기통신사업의 일부를 경영하게 할수 있다.

(2) 체신부장관은 사업자에게 새로운 공중통신역무를 제공하게 하거나 사업자간의

업무 영역을 조정할수 있다.

- (3) 청진부 장관은 사업자의 공중건강증진 업무에 관한 이용약관의 공약에 위반될 때에는 그 변경을 명할수 있다.
- (4) 가입전화 사용권의 승 가범의 및 각종 단말기 기의 자금범위를 확대
- (5) 정보통신 회선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
  - 일반교환회선 : 가입전화 및 가입전신  
교환설비에 연결된 회선
  - 경로교환회선 : 정보통신에 전용하는  
교환설비에 연결된 회선
  - 특정통신회선 : 텔레비전 방송으로  
전용하는 회선
- (6) 무선호출 이용 관계규정 신설
- (7) 기타 전보, 가입전화, 가입전신, 위탁자동  
작동전화, 전용 및 대여, 간접자 보전등의  
관련 규정은 현행 전기통신법의 내용을  
전수.